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5호 2003. 1. 16)

총무위원회
2003. 1. 23(목)

1. 심사경과

가. 2003. 1. 12 : 사천시장제출

나. 2003. 1. 12 : 총무위원회회부

다. 2003. 1. 22 : 사천시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개정이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주민자치과)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함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명돈)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2. 12. 31에서 2004. 6.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